

새로운시책, 실천적 선진화 이룩

식품위생행정

申 光 淳 / 서울대학교 獸醫科大學

1. 서 론

경제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성인병등의 증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개념과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개개인의 생활이념으로 정착되어 가고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바람이나 기대도 단지 安全性 뿐만아니라, 營養·體調節機能은 물론 즐거움을 구하는등 다양한 욕구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호응하여 최신의 제조·가공·보존기술을 이용한 각종 가공식품이 개발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신장은 식품의 수입건수와 물량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다.

한편 제조·가공·보존기술의 高度化·複雜化·食品流通의 大形化·廣域化, 그리고 국민의 건강지향등에 대응한 식품의 多種多樣化와 수입식품의 증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과 사건들은 더욱 복잡하여 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향으로 볼때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은 물론, 수입에서 유통·판매·소비에 일르는 각단계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食品衛生施策을 추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점을 맞이하여 과거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위한 중·장기적 시야에서 본 종합적인 食品衛生行政對策을 제시한다는 것은 21세기를 불과 10년 앞둔 90년대를 맞이하여 자못 의의가 있으며,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2. 食品衛生行政制度의 變遷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행정이 태두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한일합방이 되면서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察局에 衛生課를 둠으로서 시작하였다고 볼수 있다. 또한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법규가 적용된 것은 일본의 법률인 飲食物 其他 食品取締에 관한 件(1900년 공포)이란 법규를 근간으로 하여 이 법 제1조의 위임을 받아 食品·添加物 또는 營業등에 관한 몇가지 施行法令등이 그 모체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시행은 이들 법률을 朝鮮에 施行하는 件(1911년 10월, 勅令 제272호)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주로 단속 위주의 경찰 위생행정체제를 거쳐 8·15해방을 맞았으며, 美軍政이 실시됨에 따라 保健厚生部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위생행정의 근대화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그 후 大韓民國 정부가 수립되고 몇번의 정부기구가 개폐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는 동안 위생행정은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1961년 5·16혁명후 비로서 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즉 당시 정부의 구법 정리작업이 추진됨에 따라 과거 일제시의 총독부령이나 해방후의 군정법령등 잡다한 법규들을 통합하여 지금의 食品衛生法을 비롯하여 畜產物衛生處理法등 관련법규들을 탄생시킨 커다란 동기가 되었다.

이상과 같이 식품위생법이 공포되기 이전인 5·16까지의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규나 행정기구등 행정체도는 변화무쌍한 역정을 거쳐 내려왔으며, 이는 당시의 국가사회적 여건변화로 인한 만부득이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가지 특기할 일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으나 美軍政시의 行政制度는 가히 선진국의 수준이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제도는 당시 맥아더司令部的 미국제도 도입의 결과라 사료된다.

이와같이 食品衛生法이 單一法令으로 제정 공포(1962. 1. 20 법률 제1007호)된 이후 현재까지 6차의 개정을 거친바 있다. 이 밖에도 1969년 8월 4일자로 공포된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이 있는바, 이는 당시 소위 保健三大惡을 강력히 다스리기 위하여 특별히 제정된 법률로서 不正食品 및 添加物, 不正醫藥品 및 化粧品, 不正毒劇物의 製造행위나 無免許 醫療行爲등에 대한 社會犯罪를 가중처벌하므로서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코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법률로서 외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예라 하겠다.

한편 5·16후 중앙의 식품위생행정기구

인 保健社會部の 위생관계 기구의 변천을 보면, 1961년 10월 2일자로 종전의 防疫局이 保健局으로 개칭되었으며, 衛生課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존속하였다. 그 후 롱가리트 사건등 부정불량식품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식품위생행정의 강화가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1967년 2월 21일자로 保健局 衛生課가 環境衛生課와 食品衛生課로 분리되므로서 식품위생행정의 전담기구로서의 면모를 비로서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부정불량식품 문제는 계속 사회악으로 지탄을 받게 되었으며, 드디어 당시 청와대로 부터 소위 보건 3대악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지시가 하달되었다. 그 결과 1969년 10월 우선 긴급조치로 保健局에 衛生管理官室을 별도로 설치함과 동시에 食品衛生課와 食品指導課로 다시 분리되었으며, 지도 단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발센타를 운영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기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73년 4월에는 위생관리관실이 衛生局으로 개편되었으며, 1975년 8월에는 위생국의 식품위생과가 食品 1課·食品 2課로 되었다. 그러나 제 5 공화국이 시작되면서 1981년 정부기구의 통합정책에 따라 그동안 10여년간 성장되어 왔던 식품위생 행정기구의 주관국이었던 위생국이 없어지고 약정국으로 통합하여 藥務食品局 食品衛生課로 축소되는 행정의 후퇴를 가져왔다.

그 후 畜水産加工食品에 대한 관리업무가 농수산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됨에 따라 1985년 2월25일 보사부에는 또다시 衛生局이 신설됨과 동시에 衛生制度課·食品課·衛生監視課·公衆衛生課가 설치되므로서 행정기구의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다시 최근인 1989년 12월30일에는 보사부 직제가 다시 보완 강화되어 위생국에 위생제도과·식품과·공중위생과·위생관리과와 새로히

飲料水管理課가 신설됨으로서 더욱 현실화 되었다.

이상으로서 중앙행정기구와 관련된 식품 위생제도에 대하여만 언급한바, 이 밖에도 시험연구업무를 담당하는 國立保健院의 衛生部 및 微生物部와 國立保健安全研究院의 식품독성연구 업무가 관련기관이라 하겠다.

또한 지방행정기구로는 각 시·도의 保健社會局(또는 産業局)의 관련과와 일선 행정 조직으로 각 시·區·郡의 관련과 이 밖에도 시·도 단위마다 설치되어 있는 保健環境研究院(所)등이 있으며 이들 지방행정 기능도 시대적 여망에 부응하여 계속 강화 활성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식품위생행정이 태동된 것은 식품위생법이 공포된 1962년 부터라 할수 있으며, 현대감각에 부응될수 있는 행정체제가 이룩된 것은 1985년 위생국이 재발족됨으로서 비로서 그 기틀이 잡혔다고 할진대, 1990년대에 접어든 지금부터가 바로 우리나라 食品衛生行政史上 획기적인 전환을 기해야만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며, 앞으로의 10년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아가냐에 따라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행정현실을 개선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3. 食品衛生環境與件에의 對應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중요 식품사건과 이에 대응하는 사회환경적 여건변화에 대하여 잠깐 검토해 보기로 한다.

최근 5년간에 사회적 사건으로 대두된바 있는 주요 식품과 관련된 위해논쟁을 간추려 보면 표 1과 같이 국내에 국한된 것도 있으나 수출입식품으로 인한 국제적인 식품 위생문제가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점차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문제로는 염산으로 제조한 화학간장, 햄버거에서의 중금속 검출, 콩나물의 농약검출, 대중식품인 설농탕등에서의 수은 검출, 사건예를 비롯하여, 수출입식품과 관련된 사건으로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식품문제, 대일수출 라면의 반포소동, 수입쇠고기의 유해물질, 수입옥수수의 아플라톡신 및 수입자몽의 농약 검출문제, 특히 작년말에 일어났던 비식용우지 사용 라면의 유해해 논쟁등 크고 작은 식품위생 문제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

표 1. 최근에 논란된 주요식품 문제

일 자	사 건 명	내 용
85. 9	화학 간장 인체 유해문제	· 염산으로 만든 화학간장 인체 유해성 논란 (소비자 단체 제기)
86. 8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문제	· 소련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등에서는 이의 규제를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조치 위해우려
86.12	햄버거에서 중금속 검출	· 서울 시내 60여개 업소의 햄버거를 한 대학 교수가 검사한 결과 납, 카드뮴, 구리, 아연등이 검출되어 이의 대책이 시급
87. 2	라면에 폴리솔베이트 20첨가 문제	· 일본에 수출한 라면에 일본서 규제된 폴리솔베이트 20첨가로 반포소동
88. 3	분유중의 칼슘 광고 분쟁	· 남양과 매일측간의 분유중에 칼슘함유 유무해 광고시비
88. 3	콩나물의 농약 검출	· 시판 콩나물 재배시 농약 사용으로 인체 유해성 논란
88. 7	냉동식품의 위생관리 결여	· 냉동만두, 냉동 피자 파이등 냉동식품중의 대장균등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등 없음
88.11	대중식품에서 수은 검출	· 설렁탕, 갈비탕등에서 수은이 검출 인체 유해 (이서태 교수 논문 인용)
89. 2	수입쇠고기 유해물질 검출	·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항생물질 검출 문

일자	사건명	내용
89. 3	수입 옥수수 의 아플라톡신 검출	제 대책 시급 (한국 부인회 문제 제기) · 미국산 수입 옥수수중 에 아플라톡신 검출에 따른 규제 대책 없음
89. 4	PVC랩 인체 유해 논쟁	· PVC랩에서 발암물질인 VCM과 DOP검출 (한국 부인회 제기)
89. 6	수입 자몽의 다미노자이드 검출	· 미국산 수입 자몽에서 발암물질인 다미노자이드 농약이 함유된 것을 수입 (시민의 모임 제기)
89.11	비식용 우지 사용 라면 유해 문제	· 미국으로부터 비식용 우지(2등급)를 5개 식품업체에서 수입, 라면등에 사용한 것이 발단됨 (서울지검 특수 2부)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거에는 별로 볼 수 없었던 사건들로서 사회여건의 변화에 기인한 결과라 할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위생행정도 세계 속의 한국이란 입장에서 새로운 시책이 모색되고 실천적 선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래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 지향적인 태도는 자연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양화될수 밖에 없다. 또한 식품 산업계도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의 과학과 기술을 구사하여 점차 새로운 형태의 식품을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유통경로를 확충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가치관은 단순한 건강지향에 그치지 않고, 여가지향, 독신지향의 경향이 커지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바람(needs)도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더욱이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심장병·간장병·신장병·당뇨병·고혈압등의 성인병으로 고생하는 노인층 사람들이 식품문제도 빼놓을수 없는 대상인 것이다.

이와같이 식품산업계와 소비자는 상호 자극을 주면서 새로운 식품을 창출해 내야하며, 소비자간의 유통경로도 광범해지고 있다.

따라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생산된 식품의 안전성, 생산된 식품의 소비자가 입수할 때 까지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가 경구 섭취하기 까지의 안전성이 동시에 확보될 필요가 있다. 즉 식품의 안전성을 논할 경우에는 이와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찾아내어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효를 올릴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4. 食品衛生行政의 特性

(1) 科學·技術行政의 側面

식품위생행정은 어디까지나 과학적·기술적 뒷받침에 근거한 행정행위인 것이다. 즉 食中毒등 식품으로 인한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식품위생상의 중요한 과제인 것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醫學·獸醫學·藥學·生物學등의 학문에서 얻은 지식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청량음료수·식육 및 어패류·유제품등의 각종식품과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 포장등에 대한 規格 및 基準등 食品公典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제가 가하여 지는바, 어떤 경우에도 과학적인 연구와 기술적인 실험성과에 따른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더욱이 소비자의 食品安全性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독성 또는 발암성물질에 대하여는 지나칠 정도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요망이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추상적이고 고답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그러하지만 특히 식품위생 분야에 있어서는 all or nothing의 이론은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며, 어디까지나 安全性·健全性·經濟性·現實性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정책 결정이 바람직하다. 특히 필수적인 요건이 될수 있으며, 최종판단의 열쇠가 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지견에 근거를 두어야만 한다. 즉 식품위생행정은 科學·技術行政이어야만 한다.

(2) 外交行政的 側面

경제분야에 있어서 국제화의 물결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식품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국제무역의 자유화 조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88년 부터의 수입물량의 증가율은 현저히 높아지고 있으며, 수입품목도 다종 다양해지고 있다.

수입식품의 이와같은 경향은 검역소의 수입식품 감시부문에서도 과대한 업무량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수입식품 검사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한 각종 식품 및 식품첨가물등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는 독자적인 규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바, 이들 규정의 차이로 수출입국 간에 이견과 비관세 무역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같은 배경하에서 EC제국이나 미국등은 물론 OTO(Office of Trade Ombudsman) System(市場開放問題處理制度)을 통하여 수입식품 취급에 대한 여러가지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수입 당사국들은 각기 자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관점에서 수출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소위 비관세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외교적 고려를 하면서 국제화에 대응하는데 슬기를 발휘할 때가 왔다고 본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앞으로의 식품위생행

정은 食品外交行政의 일면도 갖추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消費者 保護行政的 側面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식생활을 즐기고 식품의 과소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즉 각종의 다양한 식품, 특히 가공식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각종 음식점과 레스토랑에서 여러가지 메뉴가 입맛을 돋우고 있다. 한편 소비자측에서 본다면 상당히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듯싶으나, 보기에 따라서는 좋건 싫건 간에 피동적으로 기피 만들어진 식품을 그대로 받아드릴수 밖에 없는 수동적 시대에 처해 있다고 할수있다. 이와같은 식생활시대 일수록 소위 먹거리(食)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원료인 신선식품에서 가공식품은 물론, 식당의 메뉴에 이르기 까지 그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상품의 특성·영양성등 소비자에 필요한 먹거리(飲食)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행정은 먹거리(食)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지도·감독하는 한편 식품의 안전성과 영양성을 고려한 소비자의 여망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식품위생행정은 消費者保護行政이라 할수도 있다.

(4) 産業振興 行政的 側面

국민의 건강지향·장수지향·여가지향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식품산업계는 나름대로의 노력과 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역시 행정적 측면에서 안전제일·건강제일이란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시키기 위하여는 적절하고 확실한 지도·감독을 가하여야만 한다.

수익자부담이란 대원칙하에서 본다면 보다 건강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을 바라는 국민에 대하여는 기업 대 사용자(user)라는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며, 이 양자의 관계를 원활한 상태로 유지시키도록 적절한 역할과

활동을 하는 것도 식품위생행정의 임무인 것이다. 또한 국민의 건강지향에 보답함과 동시에 식품산업측에도 이익(merit)을 올릴 수 있는 식품을 탄생시키고, 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측에서도 용원을 보내야만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식품위생행정은 食品産業指導行政이라 할수 있다.

5. 食品衛生行政의 展望과 課題

앞에서도 기술한바와 같이 식품위생에 관련된 문제나 사건은 일일히 거론할 여지도 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발생한 문제들은 거의가 사후 처리적인 것이 대부분으로서 사전 예방적인 조치들은 별로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발생한 식품사고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가 주종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았으며, 특히 근래에 와서는 여러가지 食品環境의 여건 변화에 따른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식품위생행정은 食品의 安全性 確保는 물론 國民의 健康生活을 지향한 행정적 기여를 목표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식품위생행정 시책의 전개는 당연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즉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위생행정을 이룩하기 위하여는

- 첫째, 科學技術에 입각한 시책의 추진
- 둘째, 消費者의 요망을 증시하는 자세
- 셋째, 國際的인 유대 추진과 정보의 교환
- 넷째, 生産業者·流通業者·販賣業者 등 식품관련 업계의 활용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여,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행정제도를 총점검하여 국가와 지방행정은 물론 영업자 및 소비자의 역할을 분명히 파헤치고 관련부처와도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시책을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음 몇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하기로 한다.

(1) 安全性確保 對策의 推進

식품의 안전성확보는 식품위생행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며, 식품 그 자체는 물론, 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등을 포함한 과학적 지견에 입각한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식품사고 방지등의 안전성확보대책을 감시 지도체제의 강화로 사전 예방적 행정방향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식품관계 영업자는 그 책임과 인식을 새롭게하여 자주적인 관리체제로 변모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食品事故對策의 推進

환경오염등에 유래되는 식품오염, 식품의 보존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식품에의 혼입, 기타 부정불량 식품의 유통등 복잡하고 다양화된 식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충실한다.

② 食中毒豫防對策의 推進

식중독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식중독균의 방제방법을 검토하여, 발생요인에 대응한 방지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식중독 방지를 위한 지도 계몽을 강화한다.

③ 規格基準등의 整備

식품 및 첨가물등의 성분, 제조방법등에 관한 규격기준, 그리고 식품등의 제조·판매과정에 있어서의 위생수칙 및 위생지도요령등을 정비한다.

④ 農産物의 殘留農藥 對策

근래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종종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약 잔류에 대한 논란, 특히 농산물 수확전과 수확후에 사용되는 농약(pre or post harvest pesticides)에 대

한 공중보건상의 조사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수출상대국과의 협의와 국내 관계 부처와의 협조로 잔류농약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 새로히 허가되는 농약에 대한 각종 안전성 Data의 평가, 1일 섭취허용량(ADI)의 설정, 잔류농약기준의 정비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⑤ 食品添加物の 安全性 確保策

과학기술의 발달과 독성시험법의 개발은 식품첨가물등의 독성학적 평가와 안전성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평가와 절차에 의한 지정 제도로 첨가물관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식품첨가물 지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⑥ 自主的 規格基準의 管理對策

특수용도 식품이라 할수있는 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유유아식품을 비롯한 합성수지제품등 일반식품의 규격기준 관리체제와 달리 상당히 고도의 제조가공기술과 미량 특수성분의 함량 분석을 요하는 이들 식품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격기준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정도 관리를 할수 있도록 자주적 규격기준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도 보급한다.

(2) 國際化에의 積極的 對備策 推進

국제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증대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공정한 거래가 국제적인 공통인식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예외가 될수 없다. 따라서 국제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의 책정에 협력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관계국과의 협의를 갖어야 한다.

또한 안전한 식품의 수입을 위하여는 검역소를 중심으로 한 수입식품 감시체제의 충실과 강화가 필요하다.

① 輸入食品 監視體制의 強化

수입식품의 증대와 안전성 확보책의 일환으로 검역소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증원, 검사기기의 정비등 검사기능의 강화, 위반식품의 수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수입업자에 대한 사전지도와 정보수집의 강화를 비롯하여 수입식육등의 유해잔류물질 대책을 추진한다.

② 國際間 協議體의 構成

식품위생에 관하여 미국·일본·EC등과 정기적인 협의를 추진하기 위한 회의를 상호 개최하며, 기타 국가와도 경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함은 물론, 필요시에는 수출상대국과의 협의로 추진한다.

③ 國際機關과의 協力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국제적 식품유통을 위하여 WHO·FAO·IAEA·ICRP등 식품위생에 관한 국제기관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한다.

(3) 調查研究事業의 推進

식품위생시책은 최신의 과학기술에 입각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21세기에는 더욱 그 정도가 강화될 것이다. 즉 농산식품·축수산식품·식품첨가물·용기포장등과 기능성식품을 포함한 신개발식품등의 안전성과 건전성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함과 동시에, 평가방법의 개발과 확립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① 食品等 汚染有害物質에 관한 調查研究 등의 推進

야채·과실·어패류·가공식품등에 잔류하는 환경오염등에 유래한 유해물질의 실태조사·안전성평가등의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② 食品添加物の 安全性 評價, 合成樹脂의 사용법에 따른 영향등 研究의 推進

식품첨가물에 관한 안전성의 재평가, 1일 섭취량의 실태조사등을 행하며, 합성수지에 관한 새로운 사용방법(전자레인지·오븐등)에 따른 영향조사등을 추진한다.

③ 天然添加物 衛生對策의 推進

앞으로 천연첨가물의 사용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품질규격의 정비와 섭취경험이 별로 없는 원료등으로 제조한 것에 대한 안전성 평가등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④ 食品의 微生物 管理에 관한 調査研究의 推進

食品의 안전성 확보상 중요대책인 미생물관리에 관하여, 식품의 특성·미생물의 성장등의 조사연구를 계획적으로 추진한다.

⑤ 新開發食品등에 관한 調査研究의 推進

새로운 기술(유전자 조작·bioreactor·고도분리 추출기술등)을 활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등에 관한 평가방법을 확립시키기 위한 각종 조사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근래 해명되고 있는 식품의 제조절기능을 생체에 충분히 발현시킬수 있는 기능성 식품의 적정 이용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4) 行政機構 및 專門要員의 強化

식품위생시책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담당할 행정기구와 전담요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식품위생에 관계되는 기존의 행정조직에 대한 기능적 평가를 실시하고, 종사하는 각종 요원의 역할을 점검하여, 시대가 요청하는 행정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앙 및 지방기구의 보강과 자질있는 전담요원의 확보대책을 강구한다.

① 行政管理 組織 및 機能의 強化

현 행정기구의 분류나 업무분장은 행정기능의 전문성과 과학화가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미비한 중앙 및 지방행정 기구의 기능을 보강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담하여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행정행위가 이룩되도록 행정체제를 정비 강화한다.

② 食品衛生監視員의 確保 및 資質의 向上

식품위생감시원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급속히 발전되는 과학기술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강습회·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자질의 향상을 도모한다. 전문인력의 확보는 기존 자격자를 신규 채용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공무원중에서 유자격자를 전보시키는 방안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일단 전담요원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기술직에서 계속 활용될수 있는 인사관리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③ 食品衛生管理人 및 自律指導員의 資質 向上

식품위생관리인 및 자율지도원에 대한 자질향상책으로 종사업종·직종·숙련도등에 따라 이에 걸맞는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교육·연수등을 실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자질이 갖추어진 자만이 자격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5) 食品衛生 情報 System의 構築

식품의 국제적 유통이 활발해 짐에 따라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관계기관은 물론, 여러 외국과 국제기관등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net work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일의 발전하는 세계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입수·해석·전달하는 정보처리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① 食品衛生行政에 관계되는 高度情報管理 System의 確立

식품위생에 관한 국내외의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수집, 컴퓨터 해석을 하므로써, 각종 시책을 기획 입안할 경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System을 확립한다.

② 食品衛生에 관한 情報網의 整備

중앙의 식품위생에 관한 기초자료 기능과 지방의 정보서비스·지도감시·연수 기능등을 갖춘 국내 온라인화를 검토 정비한다.

③ WHO등 國際的인 情報網의 整備

제외국 및 관계국제기관의 식품관계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함과 동시에 관계각국에 feed-back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보망의 정비를 검토한다.

(6) 食品衛生意識의 涵養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식품의 유통을 위하여는 식품의 제조자·판매자등 식품관계영업자와 소비자간의 공통적인 이해와 인식으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올릴수 있다.

따라서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의 보급은 물론, 특히 앞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한 제조·가공·보존기술등에 대하여도 그 안전성과 건전성에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

① 食品 및 添加物의 安全性·健全性에 관한 啓蒙 活動의 推進

영업자 또는 소비자에 대하여 식품 및 첨가물의 안전성·건전성·유용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등 잘못된 인식과 전문지식의 결여로 볼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활동을 추진한다.

② 各種 加工食品에 대한 適正表示의 推進

일반식품·유육수산식품·건강보조식품·특수영양식품등 각종 가공식품에 대하여 표시기준에 맞는 적정한 표시가 이행되도록 추진한다. 즉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이들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으로 확인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③ 食品關聯團體를 통한 自主的 食品衛生活動의 推進

업계의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관리방안으로 자율지도원과 자체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 食品衛生協會(가칭)를 법인체로 설립하고 그 밑에 食品衛生研究所를 설치하여 자율지도원과 시험연구 요원을 확보하여 업계 스스로의 자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④ 消費者등에 대한 情報提供 體制의 整備

국내외의 식품위생관계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소비자·식품영업자등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수 있는 체제를 정비 추진한다.

맺 는 말

이상으로 2000년대를 준비하기 위한 1990년대의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의 나아갈 좌표와 전망, 그리고 앞으로 당면할 과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을 원론적으로 제시한바 있다.

특히 식품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이며, 식품의 수입은 더욱 다종 다양화 될것이며, 이에 부응하여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관심은 건강지향적이고 식문화를 즐기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이 확실하다.

이와같이 시대적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식품의 안전성·건전성·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보다 과학기술적이고 선진화된 자세로 대처할 때 비로서 식품위생행정의 목적하는바가 달성될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모든 행정관리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식품위생행정은 국민의 건강관리와 보건증진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시책을 다루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 통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가 발달한 미국등 서구 여러나라나 이웃 일본의 식품위생행정 제도에서 역역히 엿볼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러한 선진화된 체도를 과감히 받아드려, 낙후된 이 분야에 대하여 국가적이고 획기적인 지원과 과감한 정책 배려가 가해질 때 비로서 균형발전되고 선진화된 국가로 진입할수 있다고 확신한다.